

2023년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군 중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의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2
2. 사업추진체계	5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6
4. 기술료 징수	7
5. 신청자격 등	8
6. 평가절차 및 기준	10
7. 근거법령 및 규정	11
8. 사업신청	12
9. 제출서류	12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의 ESG가치 기반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 및 공동혁신 기술개발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20.5.26. 제정)
- 본 사업은 ESG를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경제 실현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사회분야 현안의 공동혁신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

구분	지역	대상지역	
		거점산단	연계산단·지역
'20년 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인천	남동(국)	부평, 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경자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울촌1(일)
'21년 지역	경기	반월시화(국)	성남(일), 화성발안(일), 판교테크노밸리
	경남	창원(국)	사천(일), 함안칠서(일), 김해골든루트(일)
	부산	명지녹산(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일), 신평장림(일), 부산진해경자구역 지사지역
	울산	울산미포(국)	테크노(일), 매곡(일)
	전북	군산(국)	익산제2(일), 완주과학(일), 새만금(국)
'22년 지역	경북	포항(국)	경주외동(일), 영천첨단부품(일), 포항철강(일)
	대전	대전(일)	대덕연구개발특구(국)
	전남	대불(국)	연남삼호(일), 해남화원(농,일), 목포삼진(일)
	충남	천안제3(일)	인주(일), 아산테크노밸리(일), 강소연구개발특구(풍세(일))
	충북	청주(일)	오송생명(국), 오창과학(일), 옥산(일)

* 컨소시엄 구성 시 「"1-3. 지원대상과제" 中 "필수 의무사항" 중소·중견기업 5개사」는 위 표의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만 인정

1-2. 지원방법

-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상용화)모델 구체화 통한 ESG형 공동혁신 성과제고를 위한 컨소시엄을 지원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2년 이내 (1차연도는 9개월 지원)	■ ESG 기본전략 및 관리체계¹⁾(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기술개발·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1) 환경개선, 안전관리, 공급망관리, 자원공동활용 등 ESG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및 핵심이슈 도출, 컨소시엄 구성원의 ESG수준진단 및 개선방향성 정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 계획수립, 세부 전략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성과 목표 구체화, ESG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규제개선 및 재교육/전환교육 추진방안 등

1-3. 지원대상과제

구분	주 요 내 용			
2023년도 예산(안)	3,946백만원			
지원규모 ¹⁾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	'23.4~12	9개월	845백만원 이내
	2차년도	'24.1~12	12개월	1,126백만원 이내
지원과제	(신규) 3개 과제, (계속) 1개 과제			
공모유형	분야공모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음. 단,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요기업 ²⁾ , 대학, 연구소, 협단체, 지역주민 협의체, 사업화 전문회사 ³⁾ 등			
필수 의무사항	■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군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개사, 수요기업 2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³⁾ 1개 ■ 지원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내 산단ESG거버넌스를 구성하고 ESG형 공동혁신 전략 수립·이행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이 때 전문기관이 별도의 ESG거버넌스(각 기관 및 단체 등)를 구성할 경우 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함 (필요시 병합운영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ESG거버넌스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추천·변경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수요기업 협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 확인제 등록 필수(www.benis.or.kr)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사업화 전문회사(총 53개사, 기술은행 홈페이지(<https://www.ntb.kr>)-NTB네트워크-사업화전문회사 항목에서 조회가능)

1-4. 지원분야

-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군 중심 가치사슬(컨소시엄)의 ESG역량 개선에 기여 가능한 아래 5개 분야 지원

* 아래 5개 분야를 혼용하여 수립(예시 :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공정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

순번	분야	내용
1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 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 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2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 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3	생산공정/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 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4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 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편입을 위한 주력수출산업 분야 공급망의 GVC현황 및 ESG현황분석을 통한 구매연계형 기술 개발·실증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 ESG지원 계획수립·이행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한 구매연계형 공동기술 R&BD
5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 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1-5. 지원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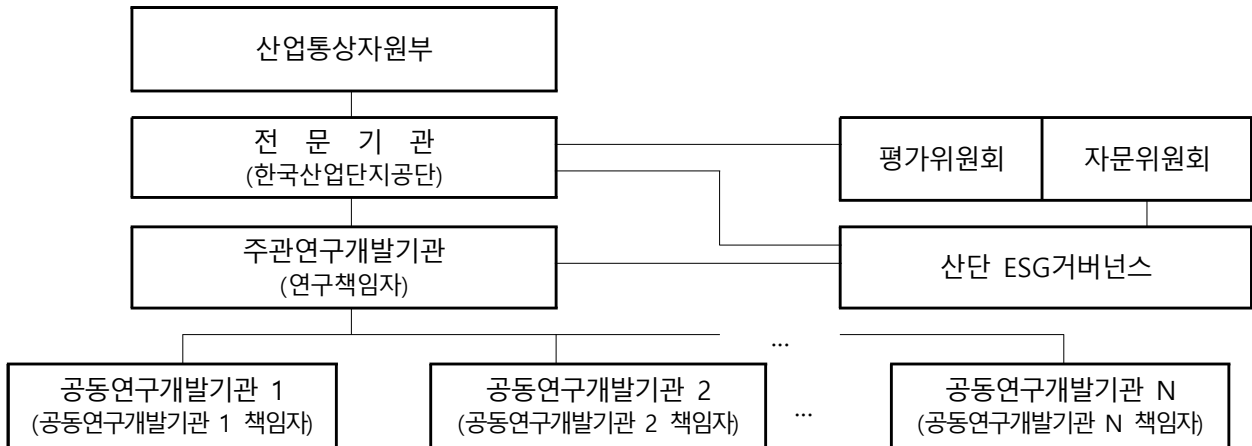
- 「1-4. 지원분야」에 적합한 아래의 지원 메뉴를 연차별 적정지원 규모 내에서 조합하여 신청

구분	지원메뉴	적정지원규모	
		1차년도	2차년도
비R&D	■ ESG형 공동혁신 전략수립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 거버넌스 구성 및 네트워크 활동		
	■ 제도/규제 개선 및 재교육/전환교육 지원 등		
R&D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	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개발기술 실증지원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3억원 이내	8억원 이내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3억원 이내	4억원 이내

* 1, 2차년도 최대 지원금액은 「1-3. 지원대상과제」 중 “지원규모” 참고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일정	추진절차	주체
'23.1월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3월	과제접수	연구개발기관→ KICOX(지역본부)
~'23.3월말	현장실태조사	KICOX(지역본부)
'23.4월	선정평가	KICOX(평가위원회)
'23.4월	지원대상과제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4~5월	협약체결	KICOX(지역본부) ↔연구개발기관
'23.4~12월(9개월)	1차년도 과제 수행(기술개발 등)	연구개발기관
'23.11월	1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KICOX(지역본부)
'24.1~12월(12개월)	2차년도 과제 수행(기술개발 등)	연구개발기관
'25.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연구개발기관→ KICOX(평가위원회)
'25.2월~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KICOX↔연구개발기관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3-1.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중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 ¹⁾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아닌기업 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⁵⁾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75% 이하로 계상 가능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가능)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및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4. 기술료 징수

4-1.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4-2.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5. 신청자격 등

5-1. 신청자격

필수 자격요건		선택 자격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4개사 이상 ■ 수요기업 2개사 이상 ■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 사업화 전문회사 1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 5에 해당하는 기관, 산단대개조 지역내 지역주민협의체

-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임
- 2)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단 대개조 산업단지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입주기업확인서와 기업부설연구소 함께 보유해야 자격이 있음)

5-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aggi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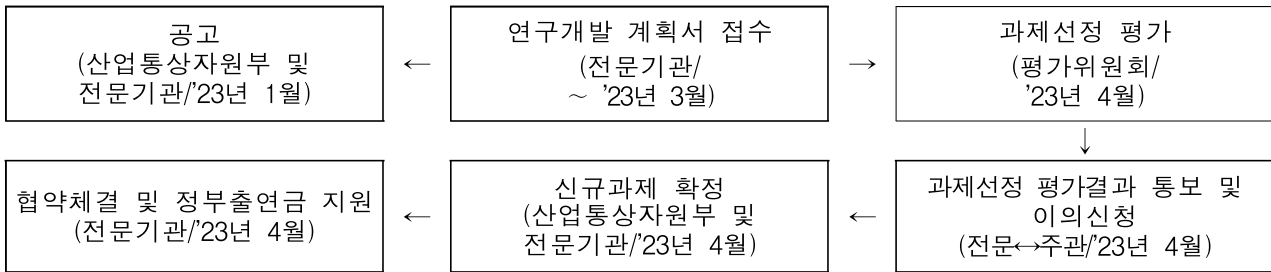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및 연구소 업력,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등

6. 평가 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면 혹은 대면)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6-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목적 부합성(1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5
	○ ESG형 산단 공동혁신 현안 해결 가능성 여부	5
추진전략 (50)	○ 기술개발 및 실증 주제의 혁신성	15
	○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의 구체성	10
	○ 과제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10
	○ 성과목표의 타당성(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산출근거 등)	5
	○ 추진일정의 구체성	5
	○ 기존과제(사업)과의 차별성 등	5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 및 실증 성과의 우수성·활용방안	5
	○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급사슬 체계 등)	5
	○ 해당산업의 산단내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5
	○ 컨소시엄 구성원간 공동 목표설정 및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5
연구역량 (10)	○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협조체계	5
	○ 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기자재 및 시설 보유여부	5
예산계획 (10)	○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	10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합 계		100

* [참고]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추진방향 제시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최고득점 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선정된 과제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7-1.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7-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윤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사업신청

- (접수기간) 2023. 1. 26(목) ~ 2023. 3. 27.(월) 15시
- (접 수 처) 전산등록(KICOX 사업관리시스템, www.kicox.or.kr/cluster)
 - 연구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가 원칙
-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산업부 및 산단공 홈페이지)
- (문 의 처) 신청기관이 소재한 산업단지 및 집적지를 관할하거나 가장 인접한 한국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사

지역	주 소	연락처(070-8895-****)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고잔동)	7454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7519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7716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54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5층	7913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9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7818
충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7616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7973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7843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7885
본사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7258

- 시스템 사용·오류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성과팀(070-8895-7208)

9.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과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NO	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해당 시)	각 1부
3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확인서류(기업에 한함) ①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확인서류(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류	각 1부
5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6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최근 3개 연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각 1부
7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에 한함)	각 1부
8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연구자용)	각 1부
9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화·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10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1.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2. 중앙행정기관명: 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내역사업명: 해당 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6. 공고번호: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8. 지원대상분야: 공고문 p.4 지원분야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9.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에 "해외"로 기재합니다.
 - 3)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18. 기관장 서명: 신청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의 직인으로 대체하며,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차단계 제출 시에는 직인생략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 ¹⁾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R&D)		총괄연구개발 과제번호 ³⁾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²⁾		공동혁신 구축지원		연구개발 과제번호 ⁴⁾					
기술분류 ⁵⁾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명칭	00%	2순위 소분류 명칭	00%	3순위 소분류 명칭	0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명칭	00%	2순위 소분류 명칭	00%	3순위 소분류 명칭	00%		
총괄연구개발과제명 ⁶⁾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⁷⁾									
전체 연구개발기간 ⁸⁾					기술료	징수[]	비징수[]		
총 연구개발비 ⁹⁾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천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천원)							
연구개발단계 ¹⁰⁾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준비도(TRL) ¹¹⁾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 유형 ¹²⁾ (해당 시 작성)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해당없음[]							
		산업고도화형[] 사회문제해결형[] 신산업창출형[] 해당없음[]							
		R&D 샌드박스(일반)[] R&D 샌드박스(지정)[]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 특성 ¹³⁾ (해당 시 작성_중복체크)		IP R&D연계[] 표준연계[] 디자인연계[] BI연계[] 경쟁형R&D[] 국제공동[] 안전관리형[] 챌린지 트랙[] 복수형R&D[]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가핵심기술[] 탄소중립[] 해당없음[]							
연구개발 목표 ¹⁴⁾ 및 내용 ¹⁵⁾		최종 목표		[최종목표] ○ [1차년도 목표] ○ [2차년도 목표] ○					
		전체 내용		[1차년도 개발내용] ○ [2차년도 개발내용]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¹⁶⁾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기여도(단위: %)						
			연구개발종료 1년차	연구개발종료 2년차	연구개발종료 3년차	연구개발종료 4년차	연구개발종료 5년차	연구개발종료 6년차	연구개발종료 7년차
XXXXXX									
XXXXXX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1.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총괄연구개발 과제번호: 총괄 과제명에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통합형(세부)/병렬형(세부)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준비도(TRL):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험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유형에 [√] 표시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과제의 특성에 [√] 표시합니다.
14. 연구개발 목표: 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페이지 표기)
1-2.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페이지 표기)
1-3. ESG형 산단 공동혁신과 연구개발과제의 연계성	(페이지 표기)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페이지 표기)
2-2.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페이지 표기)
2-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페이지 표기)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페이지 표기)
3-2.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페이지 표기)
3-3. ESG형 산단 공동혁신 추진전략	(페이지 표기)
3-4. 기술개발 추진체계	(페이지 표기)
3-5. 기술개발팀 편성도	(페이지 표기)
3-6. ESG거버넌스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페이지 표기)
3-7.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방법	(페이지 표기)
(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 기재 必)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공동비즈니스 추진방안	(페이지 표기)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페이지 표기)
4-3. 연구개발성과의 산업단지내 파급효과	(페이지 표기)
4-4.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페이지 표기)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기술과 시장 현황	(페이지 표기)
5-2.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등	(페이지 표기)
5-3. 표준화 전략	(페이지 표기)
5-4. 경제적 성과 창출계획	(페이지 표기)
5-5.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페이지 표기)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페이지 표기)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협약 시 작성 및 제출)	(페이지 표기)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등 현황 ..	(페이지 표기)
7-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페이지 표기)
7-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페이지 표기)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페이지 표기)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페이지 표기)
8-3.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페이지 표기)

[별첨1]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페이지 표기)
[별첨2] 시약 ·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페이지 표기)
[별첨3]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페이지 표기)
[별첨4]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	(페이지 표기)
[별첨5]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페이지 표기)
[별첨6]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영리기관 작성)	(페이지 표기)
[별첨7] 영리기관의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 작성)	(페이지 표기)

※ 본문내용은 돋움체 12pt, 표는 돋움 8pt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 일반형 [☐] 통합형(세부)		[☒] 신청용 [☐] 협약용		기술료
	(해당항목 체크) [☐] 병렬형(세부)		[☐] 차단계 제출용		징수 [☒] 비징수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R&D)	
전문기관명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역사업명	공동혁신 구축지원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 주석으로 된 파란글씨 및 작성요령 표는 삭제 후 제출
 ※ 본문내용은 돋움체 12pt, 표는 돋움 8pt로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기술(제품)의 정의 및 범위

0
-
.

0
-
.

1-2.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0
-
.

☐ 필요성

0
-
.

1-3. ESG형 산단 공동혁신과 연구개발과제의 연계성

☐

0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작성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정책 및 RFP/품목요약서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 단계로 구분될 경우 최종목표 및 각 단계별 목표를 분리 작성하며, 표준연계과제의 경우 표준화 목표 및 연차별 표준화 개발 내용 수립 필요

(1) 최종목표 ※ 전체 목표를 표 또는 그림 등을 통해 요약하여 작성

□

0

-

.

<연구개발성과 및 성능 / ESG 가치 실현 목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 ¹⁾)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표준 (시험) · 인증 기준 ³⁾	기준 설정 근거 ⁴⁾	평가 방법 ⁵⁾	K-ESG 분류번호 ⁶⁾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필수) 탄소배출량 감축율										
2.(필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기 업수										
3.(필수) 공동혁신 거 버넌스 신규 구축 건수										
4.										
5.										
6.										
7.										

※ ESG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항목 예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기업수, 공동혁신 거버넌스 신규구축 건수, ESG인증 획득 기업수, ESG 평가점수 개선도 등

<기술개발 핵심어>

한글					
영문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및 목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

성과지표명			연도	1차년도 (YYYY~YYYY)	2차년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지표1	목표(연차별)					
	지표2	목표(연차별)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지표1	목표(연차별)					
	지표2	목표(연차별)					
계							

(1)-1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목표

[1차년도 목표(2023)]

0

[2차년도 목표(2024)]

0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최종 목표

- 최종목표와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전담기관 등록·기탁 목표 지표(참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작성)와 연구개발과제 특성반영 지표를 작성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질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 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 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주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성과와 무관한 양적인 단순 수치는 작성하지 말 것

◦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목표

- 연구개발기간이 연도로 구분되는 경우 연도별 목표를 작성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 및 기재**

☞ RFP/품목요약서에 분야별 성능(Specification)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필수로 작성하며 추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기재

-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질적 대표 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의 설정근거는 목표의 설정 이유를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 등에 근거하여 기술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향후 진도점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 연구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주3)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주4)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ASTM..., ISO..., KS..., JIS...등에서 제시하는 세부규격)

주5) 평가방법은 **연차 또는 최종 평가 시에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로 기재

주6) K-ESG 분류번호는 사업공고시 배포된 “K-ESG 가이드라인 V1.0”을 참고하여 **해당시 작성**하되, **E.S.G 각 영역별 1건 이상은 필히 작성**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KOLAS 성적서 또는 일반 시험성적서, 보고서 등을 포함함

- 공인시험기관이란 KOLAS인증 시험기관 또는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 ○○신뢰성센터)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기관을 말함

- 자체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입회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항목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요기업 평가는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수요기관의 수요기업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말함

◦ 핵심어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서 과제 관련 특수 용어를 의미함

- 관련 업계, 협회나 학회 등에서 **표준화되어 정의되었거나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구분	평가방법	평가환경
1	회수율	1차년도	공인시험기관	세부환경은 아래의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참고
		2차년도	수요기업 평가	수요기업의 품질요구서
2	정밀도	1차년도		
		2차년도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표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추가 기재

0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은 연차별로 표에 상세히 작성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과 시작품·시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해서 자체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에 해당하여 상세 기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재합니다.(표에 서술이 가능한 경우는 기재 불필요)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결정 근거 및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수립 필요)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2-2.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0

[국외기관(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작성
하며 없을 경우 삭제

0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0

[국외기관(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작성
하며 없을 경우 삭제

0

(2) 2차년도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0

[국외기관(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작성
하며 없을 경우 삭제

0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0

[국외기관(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작성
하며 없을 경우 삭제

0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결정사유 기입
-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을 작성하며 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에 대한 연차별로 기술
 -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전체 연구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내용 및 범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
 -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2-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일련 번호	개발 내용	1차년도(개월)												기간[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일련 번호	개발 내용	2차년도(개월)												기간[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2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2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내용 항목은 2-1. 최종목표 및 2-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 추진일정은 점선으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일정을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3-1. 기술개발 추진방법 · 전략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한 목표달성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0
-

3-2. 개발기술의 혁신성 · 차별성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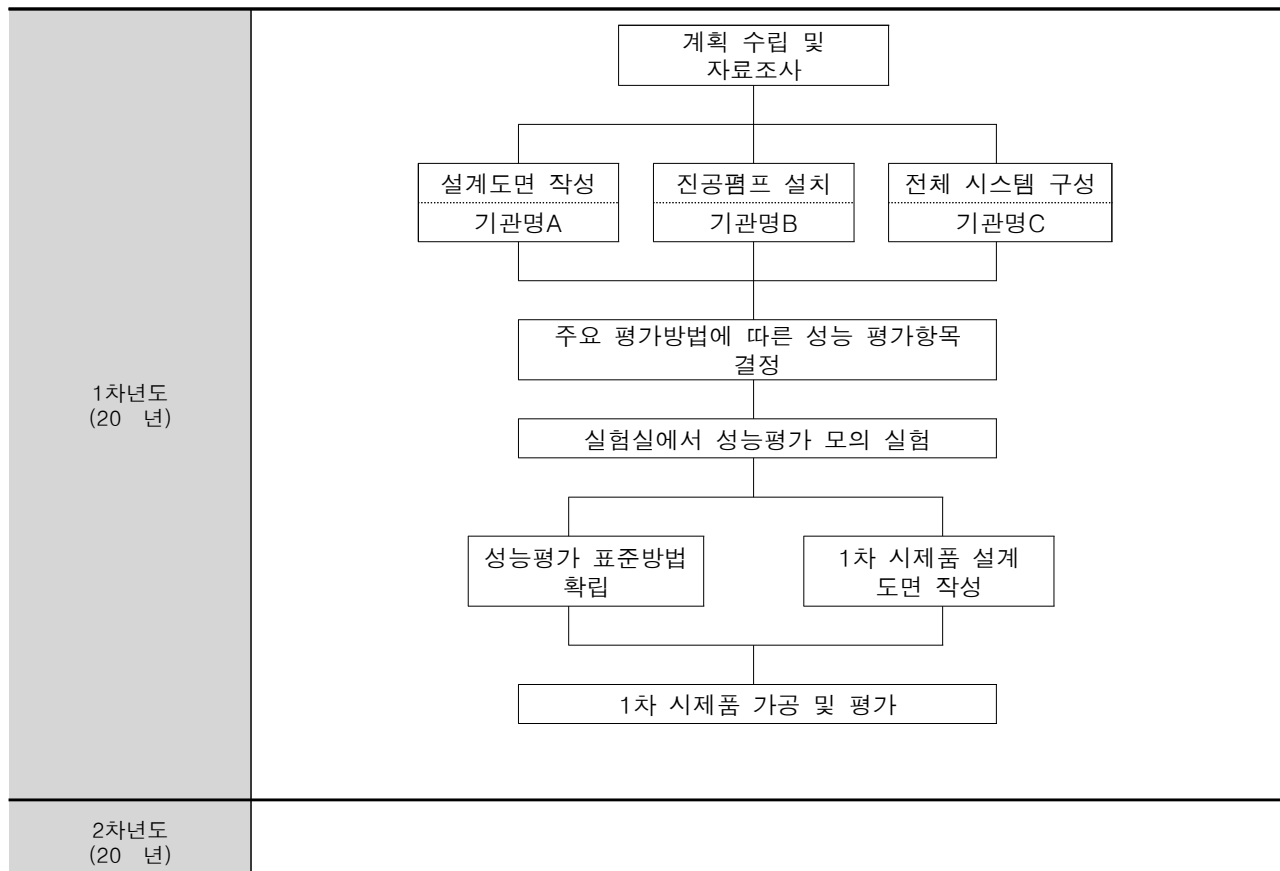
3-3. ESG형 산단 공동혁신 추진전략

※ 과제 추진시 산업단지 내 ESG가치를 확산하고 공동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작성

0
-

3-4.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표가 아닌 별도 이미지로 작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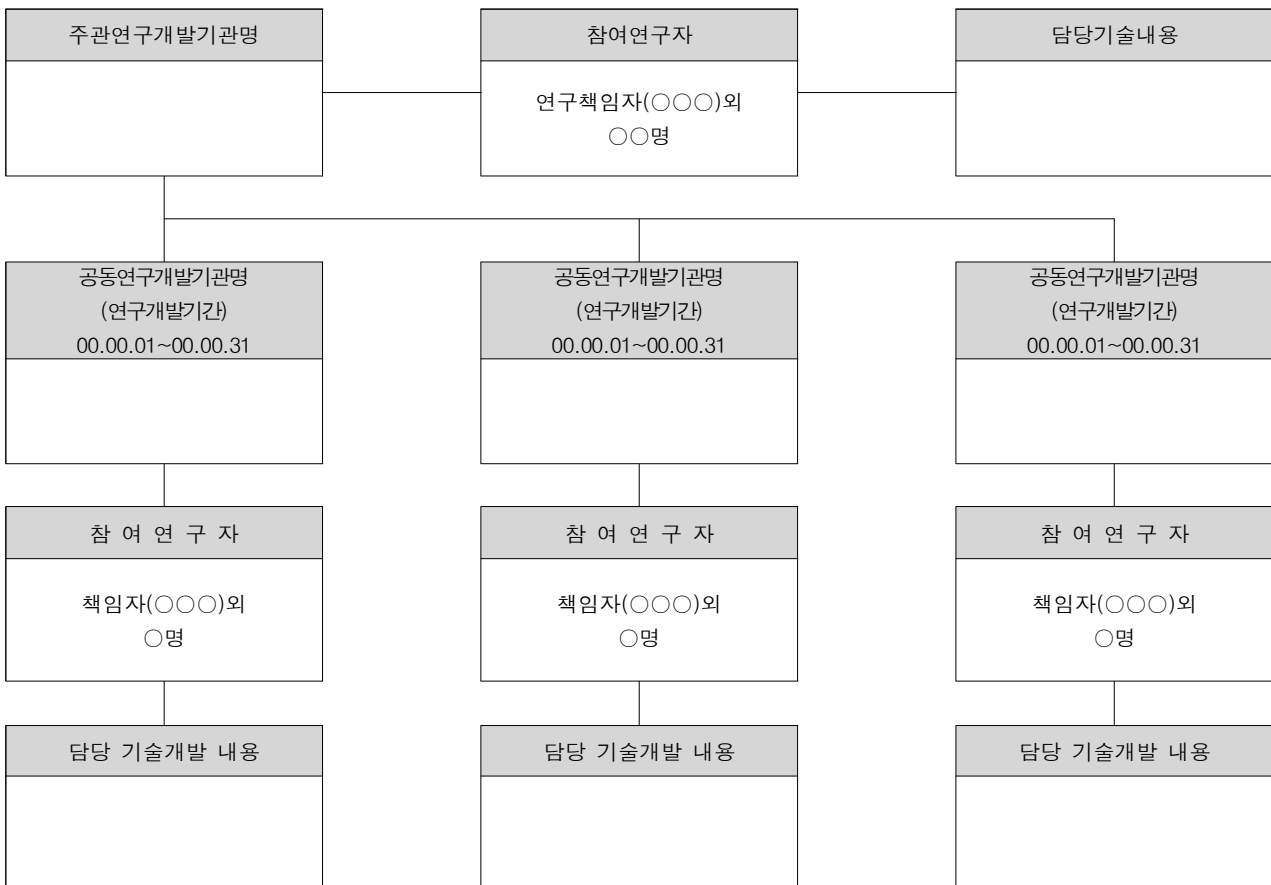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기술개발 추진 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 방법 작성

3-5. 기술개발팀 편성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자에는 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2-2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및 '3-2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3-6. ESG거버넌스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0

-

3-7.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 · 방법

(1)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효과

※ 본 과제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일자리 창출 예상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구체화

※ 연차별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 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_(연구개발과제로부터 채용하는 경우 기재 必)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기관명 (주관/공동)	채용년도 (해당차수)	채용(예정)일	성명 (국적)	참여기간	구분 (청년(의무), 청년(추가), 일반)
주관연구개발기관 명 (주관)	2023 (1차년도)	YYYY.MM.DD	○○○ (한국)		청년(의무)
	2024 (2차년도)	YYYY.MM.DD	채용예정 (한국)		청년(추가)
	2025 (3차년도)	YYYY.MM.DD	채용예정 (한국)		청년(의무)
공동연구개발기관 명 (공동)	2023 (1차년도)	YYYY.MM.DD	○○○ (한국)		일반

(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0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공동비즈니스 추진방안

0
-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성과로부터 해당하는 측면에 대해 기재

[과학·기술적 측면]

0
-

[경제적·사회적 측면]

0
-

[인프라 측면]

0
-

4-3. 연구개발성과의 산업단지내 파급효과

0
-

4-4.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만 작성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기여도(단위: %)						
	연구개발종료 1년차	연구개발종료 2년차	연구개발종료 3년차	연구개발종료 4년차	연구개발종료 5년차	연구개발종료 6년차	연구개발종료 7년차
AA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BBB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에 기재한 항목을 기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제품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 (과학적 성과) 학문 분야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피인용 지수 등
- (기술적 성과) 표준 특허, 3급 특허, 특허의 잠재적 가치(발명진흥회 SMART, 특허정보원 K-PEG 등), 국제 표준 채택 등
- (경제적 성과) 기술료, 매출액 기여,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기여, 고용 창출 등
- (사회적 성과) 해당분야 졸업자 수, 추가고용규모, 정책활용도, 언론 홍보건수 등
- (인프라 성과) 장비 공동 활용률, 성능 달성도, 시험 인증 통과 여부 등

◦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 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기술료징수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중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수익 금액에 대한 기술기여도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기술료 산정방식 :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기업5%, 중견기업10%, 대기업·공기업 20%)

**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 :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 해당 하지 않음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 · 외 기술과 시장 현황 ※ 기술 수준이 파악 가능토록 기술

(1)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 신청 기관의 기술수준 등을 포함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0
-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 직접 관련된 시장 규모

0
-

(2) 국외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0
-

[국외 시장 규모 현황]

0
-

5-2.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등

(1) (연구개발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0
-

(2) (국내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0
-

(3) (국외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0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국내외 기술과 시장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등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국내외 경쟁기관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수준 등을 기재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지재산 등 현황을 작성하고 국내외 경쟁기관의 원천 지재산 현황 등을 기재
 -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기준, 표준화 관련 사항을 기재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 및 RFP/품목서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5-3. 표준화 전략 ※ 해당하는 경우 작성

5-4. 경제적 성과 창출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1) 본 과제를 통한 생산 계획

구분		(년) 개발 종료 후 1년	(년) 개발 종료 후 2년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 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 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 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 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 ¹⁾				

※ 당사 생산능력¹⁾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2) 본 과제를 통한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년) 개발 종료 후 1년	(년) 개발 종료 후 2년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¹⁾				
판매관리비 ²⁾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¹⁾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판매관리비²⁾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3)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해외시장 진출 포함) 및 기대효과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명1]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 사업화 형태 : ○ 수요처 : ○ 예상 단가 : ○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 ○
사업화 계획 및 일정	○ ○
기대효과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 사업화 형태 : ○ 수요처 : ○ 예상 단가 : ○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구분	구체적인 내용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 ○
사업화 계획 및 일정	○ ○
기대효과	

5-5.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1)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작성

○ (개요) ※ 본 과제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을 직·간접적으로 구분하여 서술

-

○ 추진전략(비전) :

-

○ 세부계획1 :

-

○ 세부계획2 :

-

(2) 사회적 가치창출의 기대효과

○

-

-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항목 (13가지)을 포괄하는 가치를 의미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o 안전책임자의 지정 · 운영

-

o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운영

-

o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계상
 - 대학 · 연구기관, 국 ·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안전관리비를 필수 계상하여 운영 중임

o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o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o 안전교육 실시 등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o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구분	체크항목
안전관리 체계	o 기관 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EIT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o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안전 책임자 부서 및 성명기재 : 정보보안팀 ○○○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사고에 발생 시 대처방안, 보고절차 및 방지대책 수립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안전 사고 처리기준
	o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점검 및 진단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연구시설 안전 관리	o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연구시설 및 장비에 보호장비, 보호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방안] ※ 안전과제형 과제는 필수 작성, 일반과제는 삭제

o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예시) 평가공정 :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내용	위험요인	현재의 예방대책	현재의 위험성			개선대책	개선 (예정) 일자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예시) 리튬이온 분리막 개발	물반응성 물질 사용으로 폭발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작업구역 지정 및 습도관리	3	3	9	1.온습도 관리용 제습장치 설치	5.4	1	2	2
예시) 탄소강 슬래브 압연재 시제품 절단	공작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공작기계 사용 매뉴얼 작성	3	3	9	1.공작기계 안전 센서 부착	5.4	1	2	2

o 해당 기술 관련 국내 · 외 안전사고 사례

-

o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o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 · 정기 · 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RFP/품목서 상 ‘안전관리’로 지정된 과제를 의미하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각 명시된 항목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기준 준수 방안,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결과,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참고 1> 위험성 추정 예시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예시

1.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노출수준(Probability)} \times \text{유해성(Severity)}$$

<표 1> 노출수준(가능성)

구분	가능성	내 용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표 2> 유해성(중대성)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TLV-TWA)	
		발생형태 : 분진(mg/m³)	발생형태 : 증기(ppm)
대	3	0.01 초과 ~ 0.1 이하	0.5 초과 ~ 5 이하
중	2	0.1 초과 ~ 1 이하	5 초과 ~ 50 이하
소	1	1 초과 ~ 1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표 3> 위험성 추정

노출수준(가능성) \ 유해성(중대성)	대(3)	중(2)	소(1)
상(3)	높음 (9)	(6) 높음	보통 (3)
중(2)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1)	보통 (3)	(2) 낮음	낮음 (1)

2.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의 정도
7~9	높음	허용 불가	즉시 개선
4~6	보통	허용 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3	낮음		현재 상태 유지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신청시 미제출)

○ 보안관리체계 이행계획

-

○ 참여연구자 관리계획

-

○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계획

-

○ 연구시설 관리계획

-

○ 정보통신망 관리계획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조치 이행계획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2항 및 【별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을 참조하여 작성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별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에 따라 세부 조치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제출

구분	체크항목
보안관리 체계	○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EIT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 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 보안담당자 부서 및 성명기재 : ○○보안팀 ○○○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 보안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참여연구자 관리	○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을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과 귀국보고 실시를 하고 있다
	○ 퇴직예정자에 별도로 보안 서약서 징구, 반출자료 안서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외국인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을 부여 하고 있다
연구시설 관리	○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 설치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 외부 입주기관의 연구 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정보통신망 관리	○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영문		국적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취득연월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yy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출원/등록)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yyyy
			yyyy

(2)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삭제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취득연월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yy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출원/등록)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yyyy
			yy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번호	소속 기관 (역할)	신규 (청년의무/추가/기타) 기존/시간선택/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 수 (3책/5공)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KEIT (주관)	기존	김OO (한국)	팀장	'86.12.02 (남)	박사	전자공학	'12	연구총괄	'21.4~24.12	30%	70%	100%	3 (3/3)
2		시간선택	박OO (한국)	책임	'81.03.02 (여)	박사	컴퓨터 과학	'08	데이터 연계	'21.9~24.12	50%	-	50%	1 (0/1)
3	KIAT (공동)	외부	이OO (한국)	수석	'75.03.02 (남)	학사	기계공학	'95	장비설계	'21.12~22.12	50%	-	50%	1 (0/1)
										'23.1~24.12	100%	-	100%	1 (0/1)
4	KETEP (공동)	신규 (청년의무)	기OO (한국)	선임	'86.03.02 (남)	박사	에너지공학	'12	데이터 측정	'21.6~24.12	30%	-	30%	1 (0/1)
5	KETEP (공동)	신규 (청년추가)	임OO (한국)	선임	'86.03.07 (남)	박사	에너지공학	'12	데이터 측정	'21.4~24.12	30%	-	30%	1 (0/1)
6	OO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박사 과정	'88.07.02 (여)	석사	화학공학	'20	기류, 열해석	'21.4~24.2	20%	40%	60%	3 (2/3)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비영리만 가능)

번호	소속 기관	신규 (청년의무/추가/기타) 기존/시간선택/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 참여연구자의 기관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참여연구자 현황]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연도별로 모두 기재(신규채용 예정 연구원 포함하며, 구체적인 채용대상자가 미확정되어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은 공란 표기)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연구지원전문가 등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기존/시간선택/외부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인력이 청년인력 의무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의무), 청년인력 추가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추가) 그 외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
-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를 말함
- * 외부인력 :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나, 외부 참여연구자 참여 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함(프리랜서, 타교학생,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
- *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외부인력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기존으로 표기
-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과제참여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
- 월단위로 ‘해당기간 인건비계상률’이 계획이 다를 경우 기간별로 구분하여 표기
 - 단,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연평균 인건비계상률 기재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 (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B)은 1차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을 기재함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 (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B)은 1차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해당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외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을 기재합니다(표지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을 기재한 경우 작성)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국외기관과 협력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7-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ZEUS 또는 자산등록번호)	구매일자	구매금액 (천원)	활용시기	연구개발 중 사용용도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현물부담금액 (천원)
		'2x.00.xx	000,000	'21.04~24.12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ZEU번호를 기재하고 없을 경우 자산등록번호 기재

7-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1)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 현황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등)				
5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기업 현황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관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국적			
	기업유형(중소, 중견, 대기업)			
	최대주주성명(국적)			
	설립 연월일			
	주생산 품목			
	상시 종업원 수			
	직전년도 매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재무분석 요약항목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20××년	계산(부채총계/자본총계)		
	20××년	계산(부채총계/자본총계)		
	20××년	계산(부채총계/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0××년	계산(유동자산/유동부채)		
	20××년	계산(유동자산/유동부채)		
	20××년	계산(유동자산/유동부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년		
		20××년		

	자본금 (백만원)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이익 3개년		20××년			
		20××년			
		20××년			
이자보상비율 3개년 (영업이익/ 이자비용)		20××년	계산(영업이익/이자비용)		
		20××년	계산(영업이익/이자비용)		
		20××년	계산(영업이익/이자비용)		

※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음수일 경우)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함

(2) 연구개발기관 국가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보유특허 실적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과제 종료 후 5년이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과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최근 5년 내 창출 시 작성 필요

o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 ※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해당과제의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개발내용 (핵심개발내용 요약)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 의 역할(주관/공동)				
KEIT	20um급 마이크로 LED 광원 소자 기술개발	oo전자	19.01~22.12		산업부 (KEIT)	수행중
		공동				
		KEIT	20.01~20.12		산업부 (KEIT)	완료
		주관				
KIAT			yy.mm~yy.mm			

o 동 과제와 관련된 기보유 지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0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은 기업만 작성하며 기업별 작성 ◦ 동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보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 기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특허도 작성 가능)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은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되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은 동 과제 참여연구자(책임자 포함)의 실적을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내 동 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를 작성(과제와 무관한 특허는 작성 지양 요망)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합 계		
연차	연구개발기관	기업유형	현금(A)	현금(B)	현물(C)	소계(D)	현금	현물	합계(E)
			비율(A/E)	비율(B/D)	비율(C/D)	비율(D/E)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중소기업	800,000	20,000	180,000	200,000	820,000	180,000	1,000,000
			80% (A/E)	10.0% (B/D)	90.0% (C/D)	20.0% (D/E)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학							
2									
총계									

※ 비율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기관부담현금(B/D),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합계(D/E)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처리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신청 과제에 공고문의 연구개발기관 유형(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기업, 그 외)에 따르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개발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20xx	20xx	
직 접 비	인 건 비	내부인건비(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 인건비(D)					
	총 인건비(E1=A+B+C+D)					
	인건비 비율(E1/M)					
	연구시설· 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 (K=E1+F+G+H+I+S+T)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o 지원메뉴별 사용계획(정부지원 연구개발비만 작성)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20xx	20xx	
비R&D	ESG형 공동혁신 전략수립			
	거버넌스 구성 및 네트워크 활동	*5천만원이내 편성	*1억원이내 편성	
	제도/규제 개선 및 재교육/전환교육 지원 등			
R&D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	*5억원이내 편성	*5억원이내 편성	
	개발기술 실증지원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3억원이내 편성	*8억원이내 편성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3억원이내 편성	*4억원이내 편성	

*표 내부 지원메뉴별 적정지원규모 이내로 편성하며, 제출시 적정지원규모 기준은 삭제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인건비 비율(%)의 경우 인건비 소계에 대해 작성 필요(산식 E1(인건비 소계)/M(연구개발비 총액))
 - 공고문 상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최소 비중) 충족여부 검토 필요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됨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연차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단가, 수량 등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하되,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표 및 8-3.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 필요함

o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 ¹⁾ (E1=A+B+C+D)				
	수정인건비 ²⁾ (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 ³⁾ (I/E2)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					
간접비 비율 ⁴⁾ (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합니다
-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범위 내로 계상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계상
 - * (예시) 공고 시 별도로 국외기관 참여를 의무로 하는 국제공동 또는 ATC+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인 경우 필수로 작성하며 공고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신청 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에서 주도적으로 국외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기관을 판정하여 협약 시 계상이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정함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o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인력 구분	성명(국적)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청년외무/ 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실습)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해당 차수 인건비 계상률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자 (기존)	홍길동(한국)	소장	내부	시간선택						
	홍길동(한국)	학생 (석사)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자 (신규)	강감찬(한국)	교수	내부	신규						
	소계(E)									
비영리 연구 지원 인력	강감찬(한국)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G=D+E+F)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을 포함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공고문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외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o 학생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소속기관	내·외부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3,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2,2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3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o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 ¹⁾ (E1=A+B+C+D)					
	수정인건비 ²⁾ (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 ³⁾ (I/E2)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						
간접비 비율 ⁴⁾ (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
-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범위 내로 계상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국외기관을 기재한 경우 계상
- * (예시) 공고 시 별도로 국외기관 참여를 의무로 하는 국제공동 또는 ATC+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인 경우 필수로 작성하며 공고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신청 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에서 주도적으로 국외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기관을 판정하여 협약 시 계상이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정함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o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인력 구분	성명(국적)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청년의무/ 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실습)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해당 차수 인건비 계상률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자 (기존)	홍길동(한국)	소장	내부	시간선택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자 (신규)	강감찬(한국)	교수	내부	신규						
		학생								
	소계(E)									
	비영리 연구 지원 인력	강감찬(한국)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 (G=D+E+F)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을 포함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공고문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o 학생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소속기관	내·외부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3,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2,2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3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8-3.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1)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계획 ※ 필수작성

구축 연차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 (규격)	구축(설치)일 또는 임차기간	설치장소	구축비용(천원)**
1	워크스테이션	구매		'21년6월	KICOX 부설연구소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개발, 구매, 임대 등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1-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연구개발 기관(구분)	연구시설명	기존/신 규 구분	운영기간 yyyy~yyyy	비용(단위 : 천원)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 영비용	현금/현 물			

(2)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필수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	사용용도	구매(입고)일	사용처	단가(천원)*	구입량*(g)	구매비용 (천원)**
1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21년6월	KICOX 공장	30	1,000g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인 경우 단가 및 구입량은 작성 불요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도 제

출

(2-1)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 필수 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제작 항목	사용용도	제작기간	입고일	사용처	구매비용 (천원)
1	4m급 3D프린팅 출력 장비 하우징(케이지)		'21.6~12	'21년12월	KICOX 공장	25,000
	소계					
2						
	소계					
총계						

(3)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 해당 시 필수 작성

연차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사	용역기간	결과물	소요비용 (천원)*
1						
	소계					
2						
	소계					
총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3-1)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구개발 기관	연도	명칭 (구분)	방식	사용용도 (업체)	수량 (건)	소요비용 (천원)	사용(이행)기간	설치장소 (결과물)
KEIT	2021	Ansys (소프트웨어 활용비)	임대	구조 설계 및 해석	1	30,000	'21.4~12	KEIT 부설연구소
	2022	논문게재료 (그 밖의 비용)	출판/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	1,000	'22.9~11	
	2022	특허전문가활용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특허전문기관 활용	특허대응전략수립 (KISTA)	1	15,000	'22.1~12	- (특허전략보고서)
	2023	표준화 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표준전문기관 활용	국제 표준 기고발표를 위한 COSD기관 컨설팅 비용 (oooo협회)	1	10,000	'23.1~12	- (표준연계 전략보고서)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영리기관은 기재 후 반드시 별첨6.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할 것)
-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4)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구개발 기관	연도	연차	세부항목	세부내용	소요비용 (천원)
KEIT	2023	1차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전문가)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박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연구지원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
				연구 보안관리비	100
				연구 윤리활동비	100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024	2차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공동혁신 구축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연구자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아.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②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라.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마.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바.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서 작성자 정보 및 동의란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¹⁾	국가연구자번 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²⁾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3책/5공) ³⁾	본 동의서 동의날짜 (YYYY.MM.DD)	본 동의서에 대한 동의 (자필서명)
○○○					100%	2/5	2022.01.01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여야 함
- ※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인건비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 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 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가.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나.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③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동의/서약 일자 (YYYY.MM .DD)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 는 대표자 서명)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확인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한 장에 모든 연구개발기관 날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동의서 각각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고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연구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처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임차(☐)		구입구분	내자(☐) 외자(☐)
구입(임차)일자(예정)		20XX. 5		구입(임차)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후 결정(☐)			
연구 시설· 장비 개요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구매 시)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견적서 첨부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연구개발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용역기간	YYYY.MM.DD ~ YYYY.MM.DD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하는 용도로 선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 건별로 작성(단, 해외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작성)